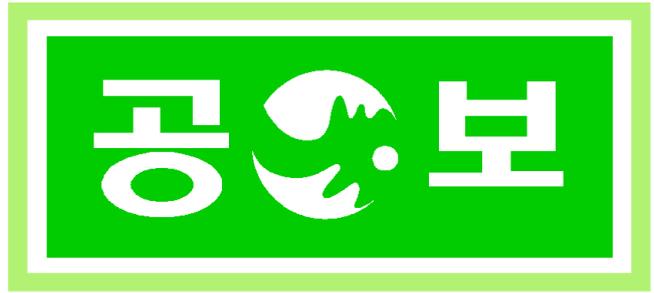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만	기 관 의 장



제 1025 호 2016. 9. 6. (화)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48호[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50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52호[「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자료제출 등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 6조, 안 제8조, 안 제15조)

나. 건설기계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01,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2016- 호

울산광역시 복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임대시 반드시”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p> <p>⑦ ~ ⑩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⑥ ----- 「<u>근로기준법</u>」 ----- ----- ----- -----.</p> <p>⑦ ~ ⑩ (현행과 같음)</p>
<p>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u>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건설기계임대) ----- ----- -- 임대할 경우 「<u>건설기계관리법</u>」 제22조에 따른 ----- -.</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삭 제></p>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나. 조례 목적 및 기금 명칭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1조)
- 다. 법률 인용 조문 정리(안 제2조제1호, 제4호, 제7호)
- 라.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3. 관련법규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전화번호 : 052-241-8032, 팩스번호 : 052-241-801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2. ~ 3. (생략) 4. <u>법 제20조의2</u>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6. (생략)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p>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금운용계획안</u> 2. <u>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u> 3.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p> <p>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 ----- 2. ~ 3. (생략) 4. <u>법 제10조의3</u>----- 5. ~ 6.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생략) 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금운용계획·변경안</u> 2. <u>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3. (생략)

붙임	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 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ㄱ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위해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ㄴ 주요내용

-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
(안 제4조)
-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관련 규정 삭제

제

- 법 제8조제1항에 맞춰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개정(안 제6조)
- 법 제9조제1항에 맞춰 구매실적 제출시기 규정(안 제7조)
- 법 제6조에 의거 구매의무만 명시(안 제8조)
 - 법에 없는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예외 규정 삭제

 근거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9. 2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 전 화 : 052-241-7766, 팩스 : 052-241-7769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국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녹색제품 관계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